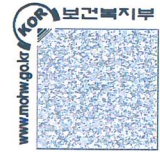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본 항목은 주요 변경사항을 간추린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및 수급 자격	지원 대상자	<p>〈신 설〉</p>	<p>탈시설 지원 강화</p>
		<p>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중이나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퇴소 후 거주지의 생활환경 관련사항도 별도 증빙자료 제출 시 사전 신청할 수 있음 - (거주지 관련사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중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 (별도 증빙자료) 신청인 자필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서에는 퇴소 예정일과 거주 예정지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추가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특별자치시·시·군·구는 사전 신청에 대한 수급자격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수급자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정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실제 퇴소 여부를 점검하여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결정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공단은 퇴소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 시 조사하지 못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로 즉시 통보 ■ 사전 신청의 경우에도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된 활동지원급여는 관련 법률에 따른 환수대상임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다만, 동시간대에 중복지원 불가) 하며 출산에 따른 특별지원급여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출산에 대한 특별지원급여 포함)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함 	여성장애인 출산 등 지원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및 서류심사	<p>가.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p> <p>※ 제출서류는 발급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지체(절단)장애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나. 제출서류의 접수 및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는 제출일 전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영구장애인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인정 가능 등록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과거에 종전 「장애등급판정기준」 등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장애등록하여 현행 판정기준과 다른 유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현행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에 대한 서류로 대체 가능 	신청절차 완화
및 수급자 격 방 문 조 사	<p>바. 가구환경 판단 기준</p> <p>4) 한부모 및 조손가족</p> <p>○ 인정기준: 수급자가 만 19세 미만 아동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인 경우</p> <p>※ 모자가족부자가족에 대한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조손가족에 대한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p>	<p>바. 가구환경 판단 기준</p> <p>4) 한부모 및 조손가족</p> <p>○ 인정기준: 수급자가 만 19세 미만 아동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가 양육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급여 인정기준 완화
본인 부담금 산정	<p>【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2019)】</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2020)】</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사업연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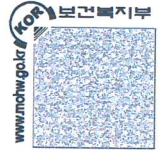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p>라. 심의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구성 시 가급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각 2인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함 사회복지사, 의료인, 장애인복지 전문가는 <u>외부인 위촉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공무원인 위원은 재적 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u>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라. 심의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구성 시 가급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각 2인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함 사회복지사, 의료인, 장애인복지 전문가는 <u>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공무원인 위원은 재적 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u> <u>가급적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u> 	성인지 감수성 제고																
	<p>라.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및 지원 기간</p> <p>○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에서 13구간에 해당하는 급여 1,556,000원</p>	<p>라.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및 지원 기간</p> <p>○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에서 13구간에 해당하는 급여 1,620,000원</p>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0. 1. 1.)																
활동지원 급여 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시간당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td> <td>12,960원</td> </tr> <tr> <td>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td> <td>19,440원</td> </tr> <tr> <td>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td> <td>19,440원</td> </tr> </tbody> </table>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2,96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9,44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9,44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시간당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td> <td>13,500원</td> </tr> <tr> <td>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td> <td>20,250원</td> </tr> <tr> <td>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td> <td>20,250원</td> </tr> </tbody> </table>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3,50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2,96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9,44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9,440원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3,50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시간당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td> <td>72,540원</td> </tr> <tr> <td>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td> <td>65,410원</td> </tr> </tbody> </table>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41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시간당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td> <td>74,470원</td> </tr> <tr> <td>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td> <td>67,150원</td> </tr> </tbody> </table>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4,47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7,150원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410원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4,47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7,15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시간당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30분 미만</td> <td>35,230원</td> </tr> <tr> <td>② 30분 이상~60분 미만</td> <td>44,190원</td> </tr> <tr> <td>③ 60분 이상</td> <td>53,170원</td> </tr> </tbody> </table>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30분 미만	35,230원	② 30분 이상~60분 미만	44,190원	③ 60분 이상	53,17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시간당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30분 미만</td> <td>36,110원</td> </tr> <tr> <td>② 30분 이상~60분 미만</td> <td>45,290원</td> </tr> <tr> <td>③ 60분 이상</td> <td>54,490원</td> </tr> </tbody> </table>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30분 미만	36,110원	② 30분 이상~60분 미만	45,290원	③ 60분 이상	54,490원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30분 미만	35,230원																		
② 30분 이상~60분 미만	44,190원																		
③ 60분 이상	53,170원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30분 미만	36,110원																		
② 30분 이상~60분 미만	45,290원																		
③ 60분 이상	54,490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방문 간호 지시서	분 류		시간당 금액	분 류		시간당 금액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 개정 (2020. 1. 1.)
	①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 하는 경우		19,430원 61,250원	①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 하는 경우		19,990원 63,030원	
활동 지원 급여 비용	②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 하는 경우		5,170원 11,150원	②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 하는 경우		5,310원 11,460원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221,000원	1구간	465점 이상	6,4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5,832,000원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6,075,000원	
	3구간	405점 이상~ 435점 미만	5,444,000원	3구간	405점 이상~ 435점 미만	5,670,000원	
	4구간	375점 이상~ 405점 미만	5,05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405점 미만	5,26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4,666,000원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4,860,000원	
	6구간	315점 이상~ 345점 미만	4,27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345점 미만	4,455,000원	
	7구간	285점 이상~ 315점 미만	3,8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 315점 미만	4,050,000원	
	8구간	255점 이상~ 285점 미만	3,500,000원	8구간	255점 이상~ 285점 미만	3,64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255점 미만	3,111,000원	9구간	225점 이상~ 255점 미만	3,240,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2,722,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2,83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195점 미만	2,33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195점 미만	2,430,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165점 미만	1,94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165점 미만	2,02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135점 미만	1,55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135점 미만	1,62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105점 미만	1,16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105점 미만	1,215,000원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778,000원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810,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610,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635,000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특별 지원 급여	구 분	월 한도액		구 분	월 한도액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 개정 (2020. 1. 1.)
	출산	1,037,000원		출산	1,080,000원		
	자립준비	260,000원		자립준비	270,000원		
	보호자일시부재	260,000원		보호자일시부재	270,000원		
활 동 지 원 금 여 비 용	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주간활동 확장형		주간활동 기본형	주간활동 확장형	
	1구간	5,703,000원	5,288,000원	1구간	5,940,000원	5,508,000원	
	2구간	5,314,000원	4,899,000원	2구간	5,535,000원	5,103,000원	
	3구간	4,925,000원	4,511,000원	3구간	5,130,000원	4,698,000원	
	4구간	4,536,000원	4,122,000원	4구간	4,725,000원	4,293,000원	
	5구간	4,148,000원	3,733,000원	5구간	4,320,000원	3,888,000원	
	6구간	3,759,000원	3,344,000원	6구간	3,915,000원	3,483,000원	
	7구간	3,370,000원	2,955,000원	7구간	3,510,000원	3,078,000원	
	8구간	2,981,000원	2,567,000원	8구간	3,105,000원	2,673,000원	
	9구간	2,592,000원	2,178,000원	9구간	2,700,000원	2,268,000원	
	10구간	2,204,000원	1,789,000원	10구간	2,295,000원	1,863,000원	
	11구간	1,815,000원	1,400,000원	11구간	1,890,000원	1,458,000원	
	12구간	1,426,000원	1,011,000원	12구간	1,485,000원	1,053,000원	
	13구간	1,037,000원	623,000원	13구간	1,080,000원	648,000원	
	14구간	648,000원	234,000원	14구간	675,000원	243,000원	
	15구간	260,000원	-	15구간	270,000원	-	
	특례	91,000원	-	특례	95,000원	-	
	본 인 부 담 금	나. 본인부담금 산정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생략) ※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58,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나. 본인부담금 산정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생략)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0년의 경우 164,900원임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확장형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생략)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확장형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생략)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활동지원급여비용	<p>라. 교육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제도일반 사전안내 ○ 바우처 카드 관리 및 사용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 안내 등 ○ <신 설> ○ 이용자 교육 매뉴얼 또는 동영상 자료 등 활용 	<p>라. 교육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제도일반 사전안내 ○ 바우처 카드 관리 및 사용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 안내 등 ○ <u>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성희롱 등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사항</u> ○ 이용자 교육 매뉴얼 또는 동영상 자료 등 활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활동지원기관	<p>라. 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기준</p> <p>3)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u>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u>」 별표1에 따른 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에 의함 	<p>라. 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기준</p> <p>3)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u>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u>」 별표1 또는 「<u>노인복지법 시행규칙</u>」 별표9에 따른 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에 의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p>가. 활동지원기관의 사업비 관리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u>1월 말까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보고</u> 	<p>가. 활동지원기관의 사업비 관리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u>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u> 	참조 법령에 일치
활동지원인력	<p>가.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u>요양보호사 제외</u>) 	<p>가.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제한조건 완화
	<p>라.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략) 	<삭 제>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기관 활동 지원 기관 평가 평가	<p>○ 「<u>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u>」 개정 예정임에 따라 2019년도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시행 예정</p>	<p>가. 활동지원기관 평가</p> <p>○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p> <p>■ 주요 평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급여 제공절차, 방법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 활동지원사, 전담인력 등 종사자 인력 관리 및 처우개선 - 활동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 <p>나. 평가의 대상 및 제외대상</p> <p>○ (평가대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부터 지정을 받은 후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운영 중인 활동지원기관</p> <p>※ 다만,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연도 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평가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 <p>○ (제외대상) 평가 대상 시기에 휴·폐업이나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 실시가 어려워 평가제외를 신청한 기관</p> <p>다. 평가 주기 및 방법</p> <p>○ (정기평가) 매 2년 마다 평가대상 기관에 서면 또는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포함 가능 <p>○ (수시대상) 정기평가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시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p>	<p>「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020. 4. 1.)</p>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기관 활동 지원 기관 평가 평가	<p>〈신 설〉</p>	<p>라. 평가 결과의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 통보) 공단은 활동지원기관 평가 지표 및 배점표에 따라 기관별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 등으로 통보 ○ (이의신청)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관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이의신청 기관에 대해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되, 재조사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전 안내 ○ (평가 결과 확정) 공단은 최종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서면 등으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평가점수를 별도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하되, 당해연도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은 점수에 관계 없이 '등급 외'로 분류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공개) 공단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평가 분석 결과를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 <p>마.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기관) 인센티브 지급, 표창 수여, 우수기관 로고 및 마크 사용 허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상위 10% 이내 기관에 평가 결과 공개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다만, 당해 현장평가 종료일 이전 2년 동안 불이익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당지급급여의 환수결정 또는 징수 등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한 기관은 제외 ○ (개선필요 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개선조치 권고 등 	<p>「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020. 4. 1.)</p>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신 설>	<p>가.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 평가기간, 평가대상,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 그 밖에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인센티브 지급 등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의신청 처리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p>나.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u>공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부서의 장</u> ○ (위원) <u>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여 구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단체, 이용자단체, 시민단체 (<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u>) - 기관 등 서비스 제공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 공단 소속 직원 2명 이내 ■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위원에 대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공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p>다.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평가위원 위촉 대상자 ○ (목적)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부당 개입 가능성 최소화 ○ (방법) 본인이 직접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020. 4. 1.)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기관평가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p>〈신 설〉</p> <p>라.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대리참석의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결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 호선된 자를 의장으로 함 ○ (위원)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위원이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임의로 다른 사람이 대리 참석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020. 4. 1.)
	활동지원기관 평가단	<p>〈신 설〉</p> <p>가. 활동지원기관 평가단의 운영 및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단의 운영) 국민연금공단 ○ (평가단의 구성) 개별 기관별로 다음 중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소속 직원 - 이용자 또는 제공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학계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p>나. 활동지원기관 평가단의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 평가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 평가대상 기관 운영실태 파악 등 평가 업무의 성실한 수행 ○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물 및 향응수수 금지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문의 또는 이의신청 제기 시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공정한 처리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제규정 준수 등 <p>다. 활동지원기관 평가 참여의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리 책임자가 본인과 친족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됨 ○ 평가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함 	